2024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기재요청사항

성	명	2025년 1월 27일(월)까지 본 서류와 함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(홈택스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제공 예정)									
	フレ										
					체	э.	사	항			
2024년 이작	4	0	(\times))			원천징수영수 본인이 직접 ³				
2곳 이상의	근무지	0	O X "O" 종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(미제출시 2025년 5월 본인이 직접 합산신고)								
세대주		0	\times								
부녀자 O (X	종합소득금액 3천만원(근로소득 기준 총급여액 41,470,588원) 이하인 다음의 거주자 1.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2.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								
한 부모가정	한 부모가정 O X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						경우				
					부	양	가	족			
※ 소득요건 : 아래의 소득 이하면 'O' 초과면 'X'로 작성 (2024년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·양도·퇴직소득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)											
성명 주민등록번호 경			장(개인	관계	소득요건	성명	주민등록번호	장애인	관계	소득요건
			-								
						감면 !	 및 공제				
중소기업 취업 감면자				2024년 신규 입사자 중 감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한 경우 감면기간 기재 (
월세액 공제		0	х								
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		0	Х	해당 공제를 받는 경우 첨부 된 신청서에서 요건 확인하시어 서명 후 제출							
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		0	Х								
					주	의	사	항			

- 1.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누락
- 2. 소득금액 기준(100만원) 초과 부양가족공제
- 3.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또는 소득공제 중복
- 4.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공제
- 5.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대상 지출액을 국세청 내용과 상이하게 공제 (단, 국세청자료의 내용이 오류인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내용대로 공제 가능)

<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명세>

소득·세액공제 항목	소득공제 영수증 내용	서비스 제공			
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	주택자금상환증명서,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,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,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증명서	0			
개인연금저축공제	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				
소기업·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	금액	0			
신용카드 등	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	0			
사용금액 소득공제	현금영수증 사용금액내역	0			
연금계좌세액공제	퇴직연금저축납입증명서·연금저축납입증명서	0			
	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	0			
보험료 세액공제 	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	0			
	진료비(약제비) 납입확인서 [병의원, 약국]	0			
 - 의료비 세액공제	시력보정용 안경구입확인서(영수증)	0			
의표미 제곡중제 	보청기·장애인보장구·의료용구 영수증	X			
	산후조리원 비용	0			
	교육비납입증명서 [초·중·고, 대학(원)]	0			
	유치원 교육비	0			
	직업능력개발훈련비영수증	0			
	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	X			
교육비 세액공제	보육료납부영수증	0			
	학점인정(독학학위)교육비납입증명서	X			
	취학전아동의 학원·체육시설교육비납입증명서	X			
	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	0			
	학자금대출상환액에 대한 교육비납입증명서	0			
기부금 세액공제		0			
월세 세액공제		X			

^{*} 위 항목은 **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**되는 서류지만 위 외의 공제받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연말정산 참고문서를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

(기부금, 교복, 안경구입비 등 각 처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에서 직접 발급 받아야함)

<연말정산 소득, 세액공제 요건표>

구 분						
		나이요건	소득요건	동거	비 고	
				주민등록동거	일시퇴거 허용	
	본인	Х	Х	X		
	배우자	Х	0	X		
기 본 공 제	직계존속	60세 이상	0	△ (주거형편상 별거 허용)		1964.12.31.이전
	직계비속 동거입양자	20세 이하	0	Х		2003.01.01.이후
	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	Х	0	Х		
	형제자매	60세 이상 20세 이하	0	0	0	1964.12.31.이전 2003.01.01.이후

ے	· 분	기본공제대성	상자의 요건	근로기간 지출한	비고		
구 분		나이요건	소득요건	비용만 공제	nl Tr		
특별	보험료	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(건강·장기요양·고용보험료)					
소득공제	주택자금공제	-	-	0	본인만 가능		
그 밖의 소득공제	개인연금저축	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(배우자,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)					
	주택마련저축	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					
	신용카드 등	X	0	0	형제자매 제외		
	세액공제 세이상)	0	0	-	기본공제대상 자녀 (입양자·위탁아동 포함, 손자녀는 제외)		
연금계	좌세액공제	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 (배우자,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)					
특별 세액공제	보장성보험료	0	0	0			
	의료비	X	Х	0			
	교육비	Х	0	0	직계존속 제외 *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? 제한없으며, 직계존속도 가능		
	기부금	X	0	Х	기본공제대상자 *정치자금기부금,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		